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특수직 채용 공고
(기술관리-건설사업)

채용 개요

□ 채용인원 : 기간제근로자 1명

□ 근무기간 : 채용예정일(2021.3.18.)로부터 1년간

* 1년 근무시 근평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기간 내에 계약연장 가능

*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프로젝트 기간 : 2019년~2024.11.21.

□ 근무장소

소속	사무실	채용인원
합천현대화사업팀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69 대성타운 2층	1명

□ 근무형태 : 주 5일, 전일제(1일 8시간 근로)

급여 · 처우

□ 보수 : 초임 총연봉 33,000~28,000천원('21년 기본연봉 25,580천원) 수준 내에서 개인별 차등

* 총연봉(기본연봉,성과급 등)은 공사 연봉관련 제규정에 의하여 개인별로 산정하여 상이할 수 있음(성과급은 입사년도 소속 부서(부)의 평가 지급율 적용)

□ 복지 : 공사 관련규정 등에 의거 개인별로 차등하여 별도 지원

* 4대보험, 건강진단, 숙소 지원 등

□ 기타 : 1년 이상 재직 시 내부기준에 의거 실무직(무기계약직) 채용 시 우대 가능

자격 기준

채용직무	인원	자 격 기 준
합천현대화 사업팀 기술관리 (건설사업)	1명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학력, 연령, 성별, 전공, 자격은 무관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필, 면제자, 또는 비대상자 ▶ 채용예정일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주요 수행업무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술보조

***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망운영 · 관리, 공사관리 보조 등**

결격 사유

□ 우리 공사 관리 규정 상 아래 각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table>
<tr><th>전형
절차</th><th>선발
배수</th><th>평가방법(배점)</th></tr>
<tr><td>1차
전형
(서류
심사)</td><td>5
배
수</td><td>
○ 자격(15%)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건설기술(토목, 기계, 전기·전자) 관련 첨부1 자격증 분류표에 열거된 자격에 한해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인정하며, 합격확인서, 취득확인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
<table>
<tr><th>자 격 증</th><th>점 수</th></tr>
<tr><td>기사급 자격증 이상</td><td>15점</td></tr>
<tr><td>산업기사급 자격증</td><td>10점</td></tr>
<tr><td>기능사급 자격증</td><td>5점</td></tr>
<tr><td>자격증 미소지자</td><td>0점</td></tr>
</table>
○ 경력(15%)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건설기술 관련 협회(건설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인 경력증명서를 직무(전문분야),기술(전문분야),직무(참여분야)로 확인
<table>
<tr><th>구분</th><th>관련분야</th></tr>
<tr><td>엔지니어링협회</td><td>건설부문(상하수도),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기계부문(용접),전기부문(전기설비),전기부문(전지전자응용)</td></tr>
<tr><td>건설기술인협회</td><td>토목(상하수도),토목(토목시공),기계(건설기계),기계(용접),기계(일반기계),전기・전자(건축전기설비),전기・전자(산업계측제어)</td></tr>
<tr><td>전기기술인협회</td><td>전기(상하수도,정수시설)</td></tr>
</table>
<table>
<tr><td>1,460일 이상</td><td>1,095일 이상</td><td>730일 이상</td><td>730일 미만</td></tr>
<tr><td>15점</td><td>10점</td><td>5점</td><td>0점</td></tr>
</table>
○ 우대사항 : 서류만점(30점)에 대해 증빙서류에 따라 가산
- 특별 가점 : 장애인(5%), 북한이탈주민(5%), 국민기초생활수급인(5%), 고령자·준고령자(5%), 운전면허소지자(3%), 건설기술 관련학과(5%,첨부)
※ 가점은 서류전형 만점범위 내에서 유리한 하나만 적용
○ 선발 : 서류·가점 합산 고득점 순 5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포기시 차순위자 면접 시행
</td></tr>
</table>

전형절차	선발 배수	평가방법(배점)
2차 전형 (면접평가)	최종선발	○ 인성면접 : 40%, 실무면접 : 30% 실시 ※ 인성,실무면접 각 40%이하는 과락 ○ 우대사항 : 우대요건 및 증빙서류에 따름 ○ 선발 : 서류·면접·가점 합산 고득점 순 최종 선발 ※ 최종합격자 채용포기시 차순위자 채용

우대요건

구 분	가 점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가점 없음 ※ 본 공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최소 선발예정인원(30% 이내)을 충족할 수 없어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법률상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조 제4항에 따라 1차와 2차를 합산한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합자에 대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스캔본 첨부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 정도 무관	1차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장애인증명서 스캔본 첨부
[북한이탈주민]	1차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정부24”에서 발급한 증명서 스캔본 첨부
[국민기초생활수급인]	1차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정부24”에서 발급한 증명서 스캔본 첨부

[고령자,준고령자(만50세 이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차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증명서 스캔본 첨부
[운전면허소지자(2종보통이상)]	1차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운전면허증 스캔본 첨부
[건설기술 관련학과]	1차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증명서 스캔본 첨부

* 관련 제출서류는 “지원서 접수” 안내 부분 참조

전형 일정 “여건에 따라 변동, 별도 통보예정”

구 분	일 자	내 용
○1차 전형 (서류심사) 발표	’21.03.04	○개별통보(인성검사 및 면접일정 통지)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21.03.05~06	○미응시자는 면접포기 간주
○2차 전형 (면접평가) 실시	’21.03.10	○인성 및 실무면접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	’21.03.12	○개별통보

지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1.02.22(월)~`21.03.02(화)18:00까지(마감시간 엄수)

※ 입사지원시스템은 ’21.02.22(월)부터 입력가능하며, ’21.03.02(화), 18:00에 자동 종료됩니다. 사지원 마감시간에 임박한 경우 다수 지원자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연장하지 않으니,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지원서를 최종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 전까지는 지원서 저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제출한 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은 K-water 입사지원시스템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접수 방법 : K-water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지원서 제출만 접수

○ K-water 입사지원시스템 : https://k-water.recruiter.co.kr

○ 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출신 학교명, 가족 관계 등

편견이 개입되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 제출서류

○ 자격기준 및 우대사항, 가점 등 합격결정과 관련있는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대상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제출

(PDF 파일만 등록 가능하며, 사진촬영 및 캡쳐는 인정하지 않음)

① 경력증명서 (지원서 작성 시 경력기술서 작성·제출 필수)
* 엔지니어링협회,건설기술인협회,전기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만 인정
② 자격증 (스캔본 첨부)
③ 관련 학교(학과 명시)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학위기 (스캔본 첨부)
*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학위기에 첨부3에 명시된 단어들이 명시된 학과만 관련학과로 인정(고등학교 이상)
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스캔본 첨부)
⑤ 장애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스캔본 첨부)
⑥ 병적증명서 (제대자 및 면제자 제출필요)
⑦ 운전면허증 (해당자에 한함, 스캔본 첨부)
⑧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스캔본 첨부)
⑨ 국민기초생활수급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스캔본 첨부)
⑩ 고령자,준고령자('71.02.01 이전) (해당자에 한함, 스캔본 첨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유의 사항

□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편견이 개입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water 사규인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기간제근로자 관리기준」 등을 적용합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신체검사 부적격, 신원조사 부적격, 기타 채용 자격요건 미구비자 등은 최종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채용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발급된 원본서류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사항은 허위로 간주됨.

□ 첨부서류의 낮은 해상도 등의 사유로 내용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전 첨부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시 스캔하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이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K-water 부산울산경남지역협력본부 이성우 과장 (☏055-268-7111)

※ 상담가능시간 : 월~금 09:00~18:00

< 채용 청탁 금지 안내 >

◈ K-water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관련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 전형에서 제외하고, 합격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직권면직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채용 청탁 등 부정행위 신고를 위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사실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2.22.

K-water 부산울산경남지역협력본부장

[첨부1] 가점 인증 국가자격증 분류표 (기술관리)

구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공통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1급
토목	측량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토목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토목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전기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기계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가스기능사 용접기능사(특수용접 포함)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 배관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가스기사 용접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건축설비기사 설비보전기사 일반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전자 통신	무선설비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설비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보유한 자격 중 최고 등급 1개만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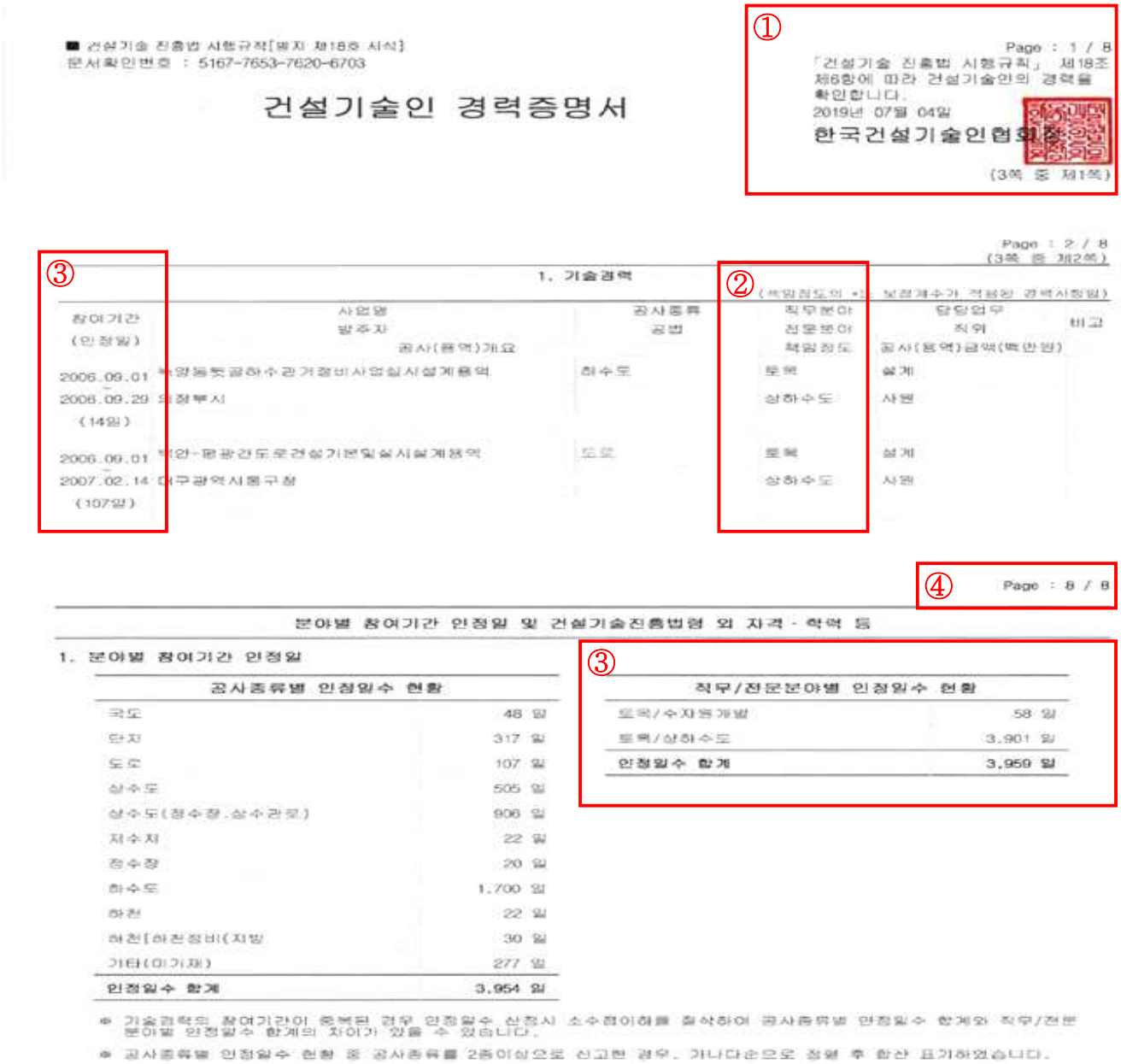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인정하며, 합격확인서, 취득확인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2] 건설기술관련 가점 인정 경력 및 심사기준

인정 경력증명서	인정 경력 심사 기준 【직무분야(전문분야), 기술부문(전문분야), 직무분야(참여분야)】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토목(상하수도) 토목(토목시공) 기계(건설기계) 기계(용접) 기계(일반기계) 전기·전자(건축전기설비) 전기·전자(산업계측제어)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건설부문(상하수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기계부문(용접)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전기기술인 경력증명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급)	전기(상하수도,정수시설)

* 심사기준에 명시된 분야에 대해서만 건설기술분야 가점으로 인정

□ 협회발급 경력증명서 예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문서확인번호 : 5167-7653-7620-670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①

Page : 1 /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2019년 07월 04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3쪽 중 제1쪽)

Page : 2 / 8
(3쪽 중 제2쪽)

③

1. 기술경력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 발주자 / 공사(용역)개요	공사종류 / 공법	② 직무분야 / 전문분야 / 책임정도	담당업무 / 직위 / 공사(용역)금액(백만원)	비고
2006.09.01 ~ 2006.09.29 (14일)	낙양동첫공하수관거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 / 영천시	하수도	토목 / 상하수도	설계 / 사원	
2006.09.01 ~ 2007.02.14 (107일)	낙안-평광간도로건설기본및실시설계용역 / 대구광역시동구청	도로	토목 / 상하수도	설계 / 사원	

④ Page : 8 / 8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학력 등

1.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현황	
국도	48 일
단지	317 일
도로	107 일
상수도	505 일
상수도(정수장,상수관로)	906 일
저수지	22 일
정수장	20 일
하수도	1,700 일
하천	22 일
하천[하천정비(지방	30 일
기타(미기재)	277 일
인정일수 합계	3,954 일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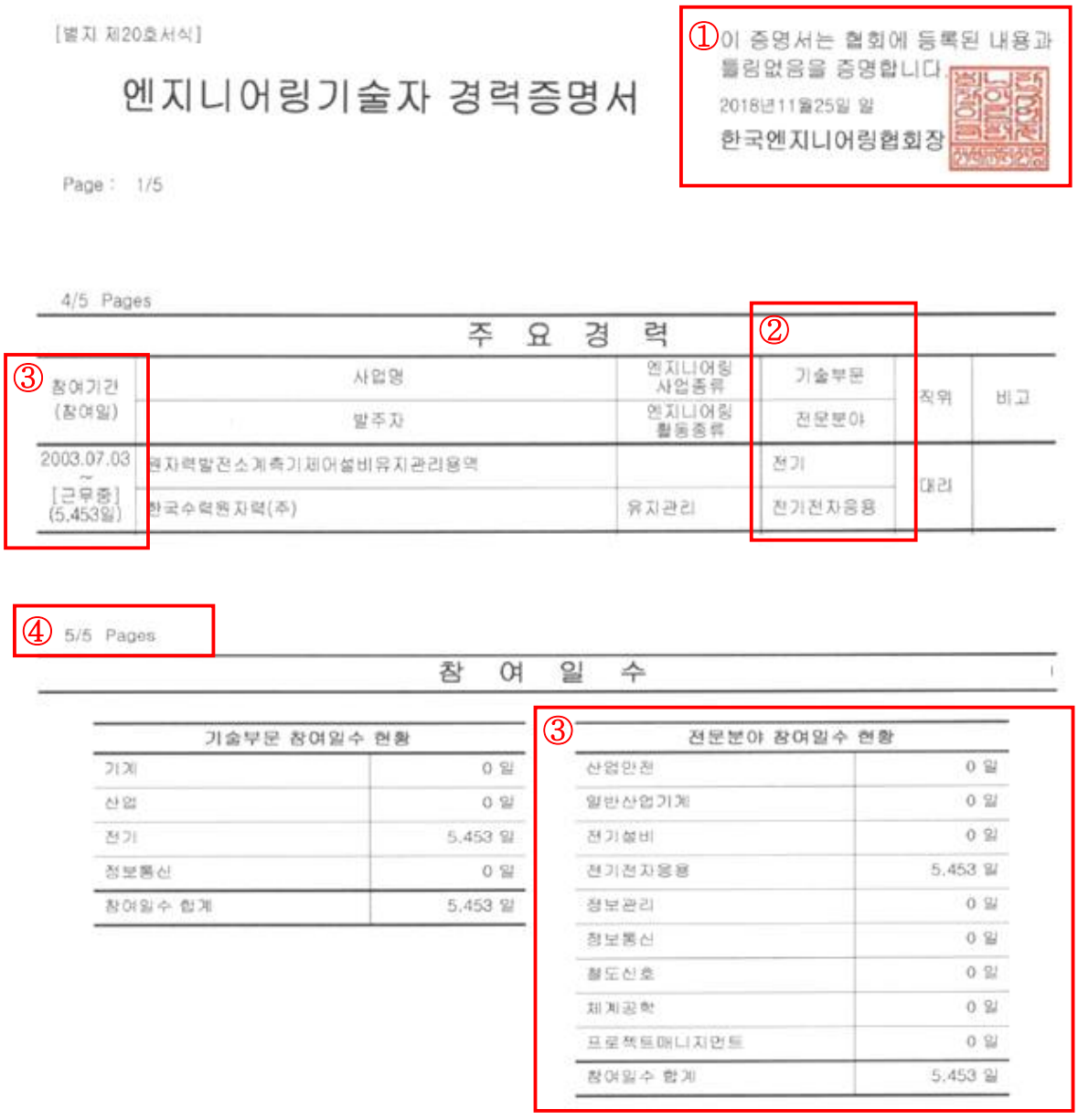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	
토목/수자원개발	58 일
토목/상하수도	3,901 일
인정일수 합계	3,959 일

* 기술경력의 참여기간이 중복된 경우 인정일수 산정시 소수점이하를 절삭하여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합계와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현황 중 공사종류를 2종이상으로 신고한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렬 후 합산 표기하였습니다.

구 분	유의사항
① 증명서 발급	협회 발급 직인 날인,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인정분야 확인	(건설기술인협회) 기술경력 내 직무분야-전문분야 확인
③ 인정일수 확인	전문분야별 참여기간(인정일), 인정일수 확인
④ 증명서 제출	증명서는 모든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 위는 예시이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 협회발급 경력증명서 예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20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Page : 1/5

① 이 증명서는 협회에 등록된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11월25일 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4/5 Pages

주 요 경 력

② ③

참여기간 (참여일)	사업명	엔지니어링 사업종류	기술부문	직위	비고
	발주자	엔지니어링 활동종류	전문분야		
2003.07.03 ~ [근무중] (5,453일)	원자력발전소계측기제어설비유지관리용역		전기	대리	
	한국수력원자력(주)	유지관리	전기전자응용		

④ 5/5 Pages

참 여 일 수

기술부문 참여일수 현황	
기계	0 일
산업	0 일
전기	5,453 일
정보통신	0 일
참여일수 합계	5,453 일

③

전문분야 참여일수 현황	
산업안전	0 일
일반산업기계	0 일
전기설비	0 일
전기전자응용	5,453 일
정보관리	0 일
정보통신	0 일
철도신호	0 일
체계공학	0 일
프로젝트매니지먼트	0 일
참여일수 합계	5,453 일

구 분	유의사항
① **증명서 발급**	협회 발급 직인 날인,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인정분야 확인**	(엔지니어링협회) 주요경력 내 기술부문-전문분야 확인
③ **인정일수 확인**	전문분야별 참여기간(참여일), 참여일수 확인
④ **증명서 제출**	증명서는 모든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 위는 예시이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 협회발급 경력증명서 예시 (전력기술인 경력증명서)

참고자료 2 【경력확인용 자료 정리 예】

(앞쪽)

경력확인용 자료

본 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개인의 경력을 재정리(표준화)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입니다.

회원번호	00 - 00- 0000000
발행번호	00000000

① 2003년 00 월 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④ (뒤쪽)

전력기술근무경력 [□( )분야, □총괄]

근무처명	③참여기간 (참여일수)	참여사업명 / 발 주 자	②직무분야 / 참여분야	담당분야 / 담당업무	근무형태 / 직 위	비 고
한국전설(주)	1990/01/01 ~ 1993/12/01 (04/00/00)	한국아파트신축공사	10 전기	12 공사	현장근무	
		한국아파트관리소	21 주거시설	시 공	대 리	
보명엔지니어링(주)	1996/01/01 1997/07/31	한국중권빌딩 신축공사	10 전기	10 설계	본사근무	
		한국중권(주)	22 업무시설	설 계	대 리	
(주)한국관리단	1997/08/01 2003/01/01	(주)한국제약 용인공장 신축공사	10 전기	13 감리	현장근무	
		(주)한국제약	50 산업시설 (제조업)	상주감리	대 리	
		(위의 내용은 신고일 2003년 01월 01일까지 확인된 경력사항입니다.) - 이 하 여 백 -				

구 분	유의사항
① 증명서 발급	협회 발급 직인 날인,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인정분야 확인	(전력기술인협회) 기술근무경력 내 직무분야-참여분야 확인
③ 인정일수 확인	참여분야별 참여기간(참여일) 확인
④ 증명서 제출	증명서는 모든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 위는 예시이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3] 건설기술관련 가점 인정 관련학과

분야	관련학과
토목	토목,건설(토목),측량,공간정보,지리정보,도시정보(지리정보),구조시스템공학,공업교육(토목),철도보선,광산공학,이학(토목),자원공학,농공학,지질,지적,토지정보,토목환경 관련학과
기계	기계,계측,냉동,용접,배관,선박,조선,자동차,금형,기관,항공,메카트로닉스공학,생산자동화공학,시스템공학,기체기관공학,제조공학,공업교육(기계),배관용접,금형공구,건축설비,철도차량 관련학과
전기·전자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학위기에 위에 명시된 단어들이 명시된 학과만 관련학과로 인정(고등학교 이상)